

## WIPO의 전통지식 등의 지적권 설정 논의에 관한 개략적 방안 모색

이제현\*, 김용진\*\*, 최환수\*\*\*

### Grope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etc. discussed in WIPO

Lee, Je-Hyun\* · Yong-Jin, Kim\*\* · Choi, Hwan-Soo\*\*\*

\*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eutical Science, College of Pharmacy,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ajon University, Deajon, Korea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is progressing their agreemen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gene resource(GR), folklore(FL) in WIPO. It is in the course of selection with precedence of TK, GR, FL in WIPO,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listing of TK documents, standardization of DB construction,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 of GR.

There are disagreemen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of TK, GR. The developed countries insist on us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the developing countries ask new ones on character of TK, GR. It causes intangible assets to be valuable trade properties in future world trade.

This research Groped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etc. debating in WIPO. This program confirms that such as TK, GR etc. not only to be the cultural property accumulated in human history, but also to be the original resource may be using at present.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transfer to UNESCO instead of WIPO which only deal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esides, the main body which protecting and supporting TK should become its holding organization so as to achieve more effective management about it.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TK, the government should have firstly the recognition that TK is the property belongs to the country. By this viewpoint, it needs to setup DB through overall excavation of the unofficial knowledges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these TK, GR. Because the positive dealing with those WIPO's discussion means to support our TK, GR, so there should have some reorganization about existing related ones, and also needs systemic supporting policies & management' system.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Keyword : WIPO, traditional knowledge, gene resource, intellectual property**

## I. 서론

20세기 중반, 서양의학은 자체내의 한계로 인해 만성질환과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악성 질환 등의 난치성 질환이 나타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이하 전통의학이라고 간략히 칭함)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된 전통의학을 근거로 한 산업화, 실용화된 상품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sup>3)</sup> 전통의학에 대한 R&D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제3세계 즉 전통의학 지식과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 선진국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 의학을 포함하고 있는 전통지식(TK), 유전자원(GR), 민간전승물(FL)에 대한 지적권 문제에 대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해 많은 TK, GR 및 FL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 의학분야의 경우 현 보건의료체제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래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선점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WIPO의 TK 등 지적권에 대한 논의동향을 근거로 우리의 전통의학의 지적권적 보호를 위한 대처 방안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 II. 본론

### 1. 우리의 개략적 대처방안

- 3) 반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142.  
선진산업 국가의 종자와 제3세계로부터 얻어진 식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등식물로부터 분리되어 현대 의학에 의해 널리 쓰이고 있는 120종의 화합물 가운데 75%는 전통적인 지식체계내에서 이미 그 효용이 알려진 것들이다. 12종 미만의 것들만 간단한 화학적 조작에 의해 합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식물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정제된 것일 뿐이다.

### 1) TK, GR의 보호 논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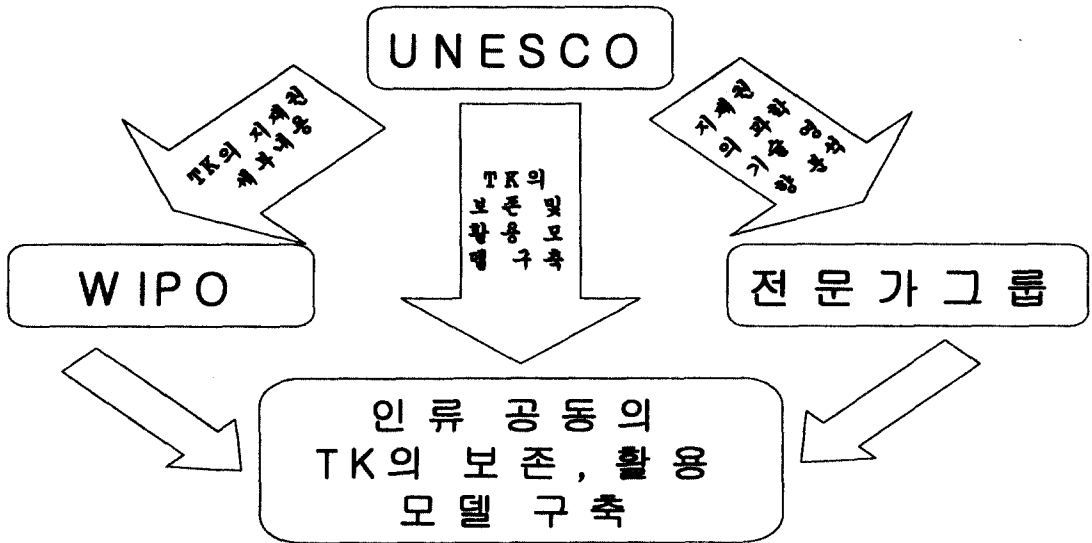
현재 WIPO 중심의 TK, GR 및 FL의 지적권적 보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이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UNESCO를 중심으로 TK에 대한 인류 문화 유산 측면에서 정립하고 그 절대적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며<sup>4)</sup>, 지적권 문제에만 국한해서 WIPO에 의뢰하고, 또한 세계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그동안 지적권이 과학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과 특히 의학분야에서의 생명특허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UNESCO는 WIPO와 타기관과 협력해서 세계 각국의 TK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기관의 지적권에 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TK 등을 인류공동유산으로 지정해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의 이 방안은 단순히 지적권적으로만 TK를 보호하려한다면 이전 지적권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sup>5)</sup> 현 WIPO의 논의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TK, GR의 보존과 활용 주체

우리는 전통 분야의 풍부한 자원국도 아니고 또한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동일하다거나 우수하지 않은 중간적인 수준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하지만 오랜 역사과정을 거처온 것을 볼 때

- 4) 지금의 TK, GR 등은 인류와 지구가 함께 해온 역사적 과정에서 축적된 유산이다. 이러한 TK 등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원천 자원이므로 후손들에게도 잘 보존하여 전승시켜야 할 의무가 현 인류에게 있다.  
5) 단순히 지적권적으로만 TK를 보호한다면 지적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업상 경제적 이익을 내는 지식이나 기술들만이 활용되어 이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사장(死藏)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TK, GR은 그 다양성을 근거로 창조성과 혁신성을 발휘하므로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해서 TK, GR의 다양성을 소멸시켜서는 안된다.  
6)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전통분야의 자원이 빈약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WIPO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발굴이 안된 TK 특히 전통 의약기술을 신속히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방안에서는 TK를 인류공동유산으로 인식하면 각국은 TK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존의 측면에서는 TK 보유국에 활용하려는 국가 또는 기업은 사전 통보를 하여 이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재권 소유자에 국가를 포함하는데 찬성함)<sup>7)</sup>. 또한 TK 보존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TK의 활용으로 인해 그것의 보존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세계적으로 TK 등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활용 상에서 있어서는 시장에 제품으로 출시되었을 때

는 전통방법의 제품과의 가격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전통방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시켜서는 안된다고 보았다<sup>8)</sup>.

활용측면에서는 TK를 활용하려는 국가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국에 제공하고 이익분배에는 매출액의 일정율을 UNESCO를 통해 TK 보유국에 제공해야 한다(UNESCO는 세계적인 TK 관련 DB를 관리해야 함). 한편 보유국은 TK의 수집·가공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또한 보존과 육성을 통해 활용 영역을 넓혀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방지란 첫째 전통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TK 활용국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독점권·배타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활용국의 생산품에 대한 지적권적 보호는 생산품 자체가 아니라 생산 방법의 차이에 국한해야 하며 TK를 보존해 온 국가와 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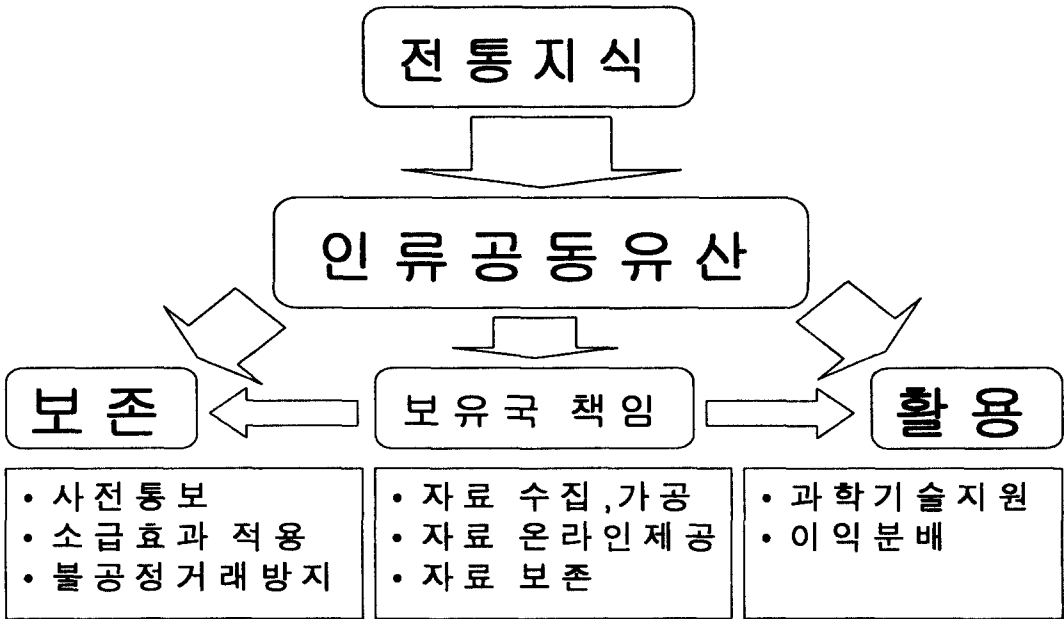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6-15.

7)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제2차 WIPO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서, 2001.

중국은 GR의 ABS 에 관한 계약형정에 적용할 원칙에 관해서는 i)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 ii)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및 iii)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라는 CBD(생물다양성협약)의 3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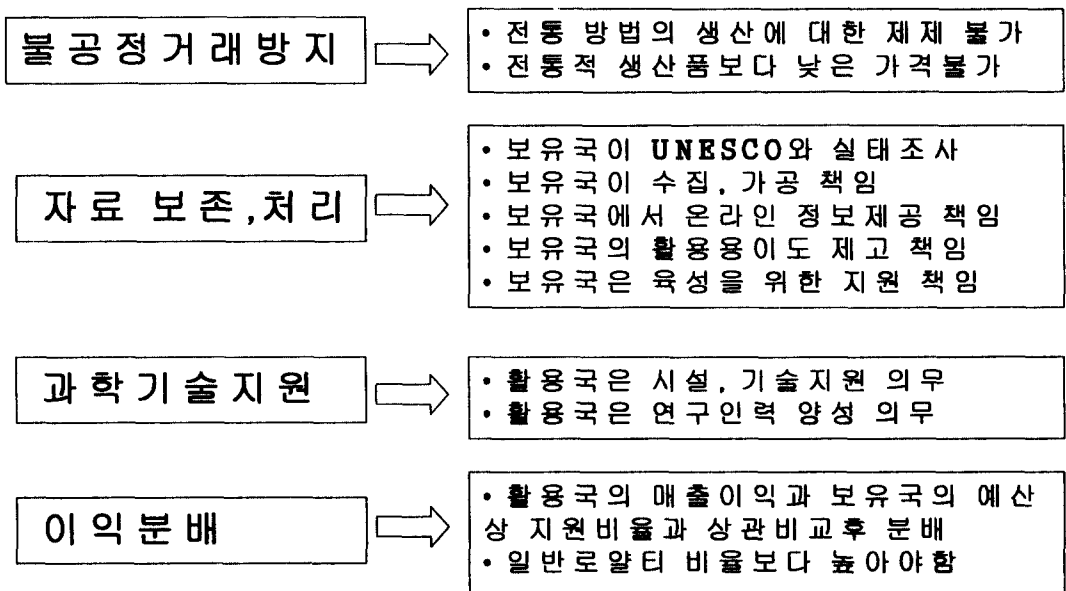
8) 반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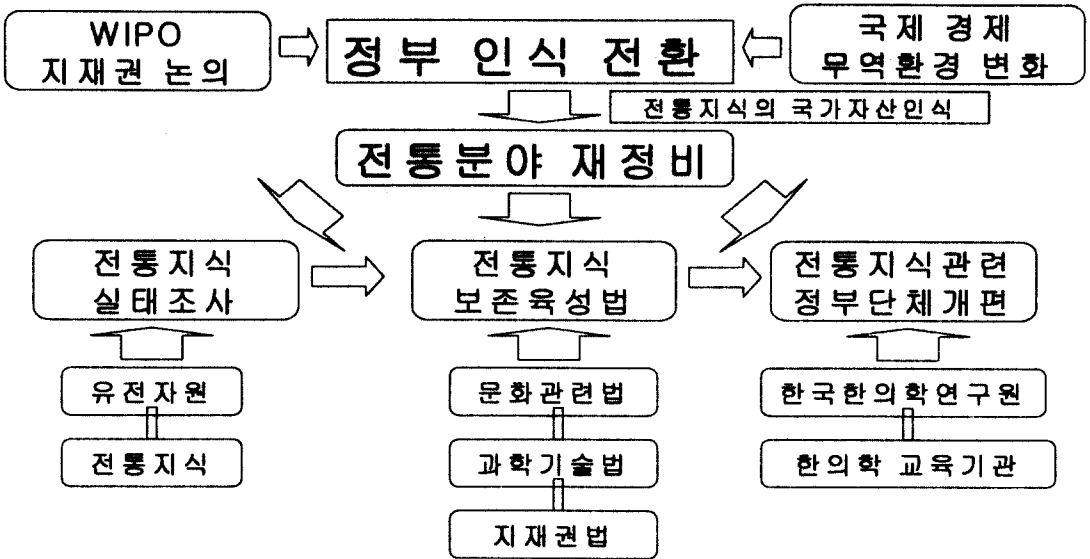
인도 전통 민속의학 Ayurveda 에서는 예전부터 Neem 나무를 주요한 약제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Neem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 회사들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방법을 사용하던 인도인들에게 전통적 방법을 통한 수제품을 제한하도록 하자 인도 방갈로레에서 대규모 항의시위('93.10)가 있었다.



지원에서는 대부분 과학기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이 될 활용국들은 자신들의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국에서 이전할 의무와 함께 인력양성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는 기존 지적재산권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및 이전 부분이 계약

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선진국에서 기술 후진국으로 기술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분배는





보유국이 제공하는 DB 구축 및 온라인시스템 관리, 활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보유국의 노력(가치평가 및 지재권 보호 가이드), 전통지식 육성을 위한 보유국의 예산지원(전체 예산에 대한 지원예산비율)을 참조하고 현재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로얄티가 아닌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기간, 지급방식 등은 추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기존의 CBD, Trips협약, 파리·베른협약 등과 같은 세계의 지재권 관련 협약, WIPO의 특허통일화안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더욱 세부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국내 전통의학의 지재권 보호 육성안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TK 등에 대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로 인해 TK 관련한 정부 육성 또한 적었다. WIPO 논의 및 현 정보시대로 나아가는 시장경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TK에 대한 국가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적으로 TK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WIPO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GR 및 TK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TK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task force 팀 혹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TK 보호에 관련된 WIPO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히 지재권적 보호 측면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TK를 우리가 개발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원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법령까지도 TK를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칭 전통지식보존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문화관련법은 하위로, 과학기술법은 병행의 수준에 이 법률을 위치시켜 전통지식의 보존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9)</sup>. 또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단체 -전통의학분야를 예로 들면, 국립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대학 등-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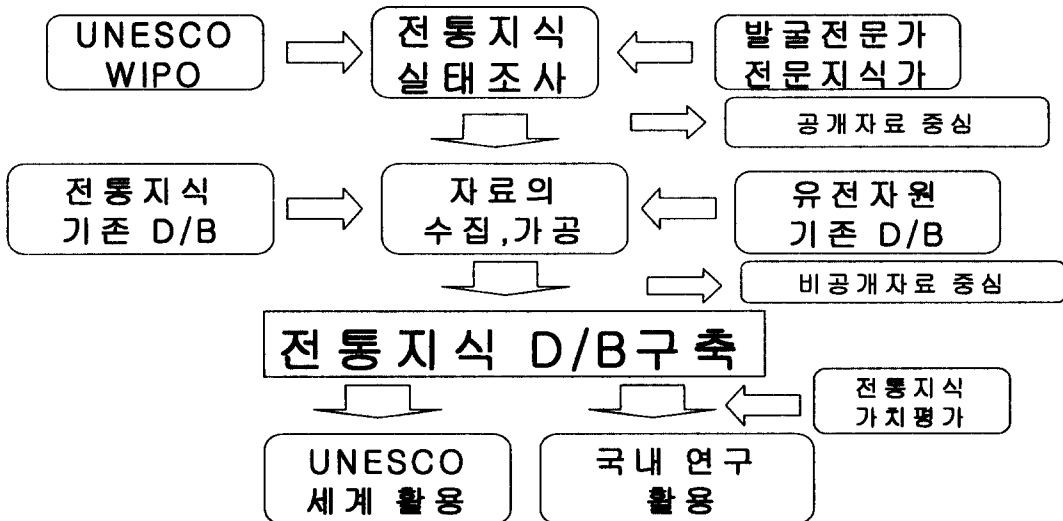
1) 국내 전통지식 DB 구축방안 개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바로 TK에 대한 실태 조사 및 DB 구축이다. 이는

9) 2003년 7월 15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한다.

WIPO 혹은 UNESCO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리나라로 전통관련 전문가를 통해 공개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기존의 TK·GR 관련 DB를 통합해야 한다. 발굴전문가를 통해 비공개된 자료까지 수집하여 국가 자산을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비공개 자료의 경우는 정부가 특별히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발굴해야 하며, 자료가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실례를 보여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 단독으로 외국 국가나 기업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거나(국가자산으로 인식하면 가능하다고 봄) 아니면 국가 DB에 포함된 경우가 개인이 양도한 경우보다 이익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 예를 들어 전통기술 보유자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TK 관련 DB는 UNESCO를 통하여 전세계에 알려질 것이고 활용될 것이다. 이외에 국내에서는 TK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을 개발하여 TK의 가치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이원화 한다면 더욱 전통지식의 육성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 보호와 함께 중장기 육성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정부주도의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TK 관련 DB 구축 및 관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TK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TK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신전통지식자로 지정해 산업화를 하는데 제도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소홀하였기 때문에 그 기반이 취약한 TK 분야에 대해 다시금 재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의학계를 예로 들면, 한국한의학연구원(본원이라고 약칭함) 및 한의과대학, 한방치료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정부가 TK를 국가적인 미래 기술 전략 아이টে็ม으로 인식한다면 기존의 기관이나 사업은 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편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TK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은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한의과대학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지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원에서 연구와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연구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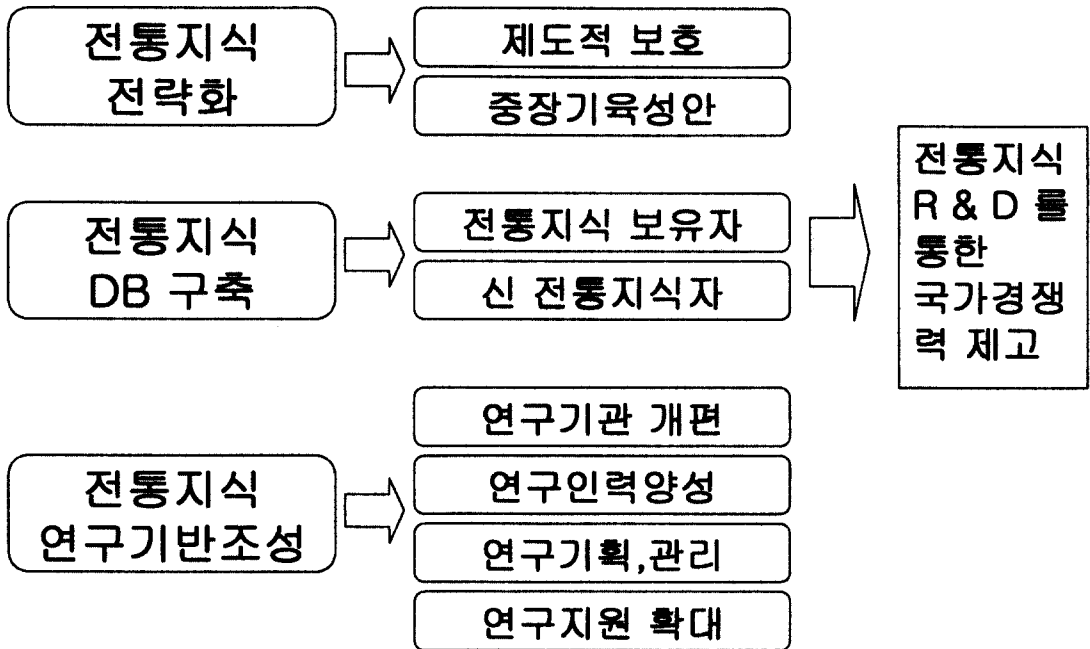
2) 국내 TK 분야 육성방안 개괄

TK를 우리 정부가 국가 자산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분야와 협력할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이외 TK에 대한 연구개발은 정부에서 직접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고 또한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TK에 대한 자세를 보면 현재는 유행에 따라 한방제제, 혹은 기능성식품 등 신약 개발에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일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TK의 특성을 살려 좀더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개발하려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금의 확대와 함께 기존의 실적위주의 연구가 아닌 기초연구와 실용연구를 병행하는 균형있는 연구지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TK를 통한 산업화의 성공확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Organization) 체계로 넘어가면서 WTO/Trips 협정을 기초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을 통상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재산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지재권 문제가 주요한 통상이슈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지재권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적



### Ⅲ. 고찰 및 결론

21세기는 전세계가 지식기반 사회로 경제환경에 변화함에 따라 정보나 인간의 지적능력이 새로운 재산가치로 부상하고 기업활동 및 기업합병에 있어서 이들 무형자산(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자산으로 되고 있다<sup>10)</sup>. 그럼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GATT에서 WTO(World Trade

국 추진중이다<sup>11)</sup>.

이러한 가운데 개도국의 문제제기를 통해 WIPO를 중심으로 TK·GR·FL에 대한 지재권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지재권의 경제적 가치의 급부상과 함께 과학기

10)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7-30

11)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재권 뉴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 287-342.

술발전상의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과학기술이 18세기 이후로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에 근거한 생산품을 원료로 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발명·발전시키는 순환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지만 그러나 21세기에 가까이가 다가오면서 급진적인 세계 과학기술의 변화와 확대에 의해 과학기술발전의 재료성 지식·기술·자원을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천지식·기술과 자원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을 삼을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됨으로써 기존의 과학기술발전 순환시스템에 큰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급박한 변화속에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유한 TK·GR을 보호육성하며 또한 현재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근대 보건의료체계내에 전통의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지재권을 인정할 경우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WIPO를 중심으로 한 세계논의를 참조하면서 전통지식의 지재권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TK, GR의 지재권적 보호에 관한 WIPO 논의에 대한 개략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본 방안은 TK, GR 등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문화적 유산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천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진행되는 논의의 중심이 지재권만을 다루는 WIPO에서 UNESCO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TK를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주체는 그 보유국이 되어 이의 활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TK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TK에 대해 국가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보존과 육성을 위한 미공개 지식의 전면적 발굴을 통해 DB를 구축해야 하며, WIPO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로 우리 TK, GR을 육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존 관련기관의 개

편과 제도적인 지원책과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존과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1. 만다나 시바 지음,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1판1쇄,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0.
2.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통권 제71호(2002. 3), 2002: 6-15.
3.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제2차 WIPO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서. 2001.
4.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발명저널. 통권2호(2002. 4). 2002: 17-30.
5. 김수동. 최근 세계의 지재권 뉴이슈와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 産業財産權 통권 제11호(2002. 5), 2002: 287-342.